

전주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6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627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소462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방수란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광성

변론 종결2020. 5. 20.

판결 선고2020. 6. 17.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소462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C 및 피고는 단기간 내에 경전철사업이 시행되면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위 경전철사업이 보류되었다. 피고는 원고 및 C와 사이에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차임을 그들이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2),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 및 피고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전철사업이 시행되면 부지로 편입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7. 9. 28. 자신의 명의로 D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E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2007. 10.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원고와 C,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경전철사업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차임 수취 내지 분배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과 달리 경전철사업이 보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C가 위 부동산의 차임 수취권한을 갖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

판사나상훈

- 1) 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하였으나, 항소장 기재 소가를 1,200만 원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하여 제1심 청구취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 2) 원고는 소장에서 '당사자간에 차임 분배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원고 및 C가 차임 수취권을 갖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원고의 2020. 5. 15.자 준비서면 참조).